
 태성전장주식회사	규 정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인권정책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1 / 8

## - 목 차 -

- 0. 개정 이력
- 1. 총 칙
- 2. 기본원칙
- 3. 시스템 구축
- 4. 인권침해 구제
- 5. 부칙





 태성전장주식회사	규 정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인권정책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3 / 8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정책은 태성전장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인권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인권경영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인권이행원칙(UNGPs)과 글로벌컴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제 2 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기본 방침]

이 정책은 근로기준법 등의 국내 인권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한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인권은 점검하며, 인권침해 피해자 발생 시 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의미한다.
- ④ “이해관계자”란 회사, 지역주민, 고객 등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소속직원 포함) 및 개인을 의미한다.

 태성전장주식회사	규정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인권정책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4 / 8

## 제 2 장 기본원칙

### 제 5 조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제 6 조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 지시토록 하고, 유해 위험한 업무 환경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 제 7 조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 ① 회사는 임직원 여권, 신분증 등 개인문서를 갈취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및 그밖의 다른 정신적·신체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제 8 조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 9 조 [차별금지]

회사는 성별,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 민족, 출신지역, 학력, 정치적 견해, 장애, 임신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태성전장주식회사	<b>규 정</b>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b>인권정책</b>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5 / 8

#### 제 10 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회사는 직책 또는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각종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 11 조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는 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 12 조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대재해 또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개인의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 제 13 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는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전에 대한 권리와 거주자의 자유를 보호한다.

#### 제 14 조 [고객 인권 보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에 고객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한다.

 태성전장주식회사	<b>규 정</b>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b>인권정책</b>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6 / 8

## 제 3 장 시스템 구축

### 제 15 조 [인권경영 교육]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과 내부 인권경영 추진 목표의 전달을 목적으로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하여 임직원간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제 16조 [신고 방법 및 접수 절차]

회사 임직원의 인권경영 위반에 대한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 내 ‘내부고발제도’를 사용한다.

- ① 회사는 신고자의 익명성과 신변을 보호한다.
- ② 신고내용은 경영진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한다.
- ③ 경영진은 접수된 인권경영 침해 사례 조사를 위하여 경영지원팀 또는 필요 시 외부 감사기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가해자 사실조사 확인 및 징계 절차는 14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태성전장주식회사	<b>규 정</b>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b>인권정책</b>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7 / 8

## 제 4 장 인권 침해 구제

### 제 17 조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회사는 인권침해 및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① 홈페이지 : <https://www.tecstar.co.kr> - 내부고발제도
- ② 유선전화 : 041-560-0803 - 총괄사장실


### 제 18 조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2. 신고자의 신분 확인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자
3. 신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를 제공한 자

- ① 회사는 인권경영의 정착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사 임직원이 인권침해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 및 보전 책임이 없다.
- ③ 임직원 외 이해관계자가 이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안에 따라 거래중단, 손해배상청구 등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성전장주식회사	규 정	표준번호	TECS-MS-001
		개정번호	1
	인 권 정 책	제정일자	2024. 11. 01
		페이지	8 / 8

## 부 칙

이 정책은 2024년 11월 1일 부로 제정한다.

이 정책은 2024년 1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